



# “강릉 5개 빙상경기장 내년 완공”

도·시, 공사현장 공개투어

스피드스케이팅장

3개월 이상 앞당겨

“종목별 테스트이벤트

차질없이 추진 할 것”

‘2018 동계올림픽’ 개최를 위해 강릉에 건설되는 5개 빙상 경기장 건설 공사가 내년 말 완료를 목표로 공사 일정을 앞당긴다.

강원도와 강릉시는 23일 강릉 올림픽파크에서 열린 빙상 경기장 공개투어 행사에서 스피드스케이팅장을 비롯한 5개 빙상경기장의 신축·보완 공사를 내년말까지 모두 완료해 내년 12월~2017년 4월에 계획된 각 종목별 테스트이벤트 월드컵이 차질없이 개최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가장 공기가 촉박한 경기장은 지난 4월까지 6개월 간 재설계를 거치면서 공사 추진이 늦어진 스피드스케이팅장이다.

강원도 관계자는 “스피드스케이팅장의 경우 2017년 3월 26일에



‘2018 평창동계올림픽 성공 개최 범 조성을 위한 빙상경기장 공개 투어’ 행사가 23일 최명희 강릉시장과 이용기 시의장, 심기섭 전 강릉시장, 정호돈·염돈호 전 강릉문화원장, 최길영 2018 스마일캠페인범시민실천협의회장을 비롯 지역 기관·단체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본공사를 마치도록 계획돼 있지만 2017년 2월에 월드컵 테스트이벤트를 반드시 실시해야 한다는 IOC 요구에 따라 경기장 시설은 그해 1월 말까지 완료하는 것으로 입찰이 이뤄졌다”며 “실제로는 그보다 더 앞당겨 2016년 말 까지 끝내는 것이 목표”라고 강조했다.

한편 2018년 올림픽 빙상 전용목 경기 개최지인 강릉에는 모두

4463억원을 투입해 스피드스케이팅, 피겨/쇼트트랙, 아이스하키 I (남자) 경기장이 올림픽 파크에, 아이스하키 II (여) 경기장이 가톨릭관동대에 각각 신축되고 컬링 경기장은 기존 강릉 실내종합체육관을 리모델링해 사용하게 된다. 올해 말 까지 공정은 스피드스케이팅과 컬링장이 각 15%, 나머지 3개 경기장은 52~53%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

최명희 강릉시장은 “빙상경기장이 들어서는 강릉 체육시설단지(40만6472㎡)는 과거 매립장부지 8만6696㎡가 포함돼 있는 데다 녹지 훼손을 최소화했기 때문에 가장 친환경적인 경기장이 될 것”이라며 “전국체전 성공 개최 열기가 동계올림픽 때까지 이어지도록 범 조성 지원체제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강릉/최동열 dychoi@kado.net

## 속초시 내년 예산 2595억 편성

올해보다 78억 증액

12월 본회의서 확정

속초시가 2016년 당초예산안을 올해 보다 78억원 늘어난 2595억원 규모로 편성하고 시의회에 제출했다.

23일 속초시에 따르면 내년도 일반 회계는 2173억원으로 올해 2153억원 대비 0.94%(20억원) 증가했다.

특별회계는 422억여원으로 올해 364억원보다 15.8%(약 58억원)가 늘었다.

일반회계의 세출은 △일반 공공행정부문 165억원(7.59%)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 부문 35억원(1.62%) △교육부문 38억원(1.75%) △문화 및 관광부문 173억원(7.97%) △환경부문 111억원(5.11%) △사회복지부문 792억원(36.45%) △보건부문 38억원(1.77%) △농림해양수산부문

109억원(5.04%) △산업중소기업 56억원(2.55%) △수송 및 교통 164억원(2.55%) △국토 및 지역개발부문 58억원(2.69%) △예비비·기타 434억원(24.91%) 등이다.

속초시의 2016년도 당초예산은 오는 12월 1일부터 열리는 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2월 14일 시의회 본회의에서 확정된다.

속초/박주석 jooseok@kado.net

## 아하! 그렇구나

### 공동이행방식의 공동수급체와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

**Q** A사와 B사는 공동이행방식으로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정부와 도로건설공사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런데 B사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도로에서 다수의 하자가 발생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이라고 합니다)에서 정한 입찰참가자격 제한사유가 발생하였습니다. 이러한 경우에 귀책사유가 있는 B사뿐 아니라 귀책사유가 없는 A사도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는지요.

**A** 공동이행방식의 공동수급체는 원칙적으로 발주자에 대하여 계약상 의무를 연대하여 이행할 책임을 부담합니다. 따라서 B사가 조잡하게 시공하여 하자가 다수 발생하였다면, B사뿐 아니라 A사도 하자에 대한 하자보수책임 및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합니다. 그러나 위와 같은 민사상 책임과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과 같은 행정상 책임을 동일하게 볼 수는 없습니다. 특히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은 직업선택의 자유와 영업의 자유를 제한하는 침익적 행정처분이므로 그 요건을 엄격하게 적용해야 할 것이며,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 제3항은 공동계약의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사유를 야기시킨 자에 대해서만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하는 것을 원칙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와 같이 공동수급체가 시공한 공사에서 다수의 하자가 발생하여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 사유가 발생하더라도, 그 하자의 책임소재를 면밀하게 조사하여 실제 책임이 있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에 대해서만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행정관청으로서의 하자가 발생한 구간을 A사와 B사 중 누가 시공하였는지 여부 등을 통하여 하자발생의 원인을 제공한 자가 B사임을 확인한 후 하자발생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 B사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하여야 합니다.

분담이행방식의 경우처럼 시공범위가 명확히 구분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공사를 시공하지 않은 구성원에게 책임이 없는 것이 비교적 명확합니다. 하지만 공동이행방식의 경우에는 그 시공범위가 대외적으로 구분되어 있지 않으며, 공동수급체 구성원들 사이의 내부적인 합의에 따라 공구를 분할하는 것에 불과하므로 직접 시공을 하지 않은 A사에도 책임이 있다고 볼 여지가 있습니다. 또한 행정청이 하자 발생이 누구의 귀책사유에 의한 것인지 판단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행정청이 공동수급체 구성원 전체의 책임이라고 보아 공동수급체 구성원인 A사와 B사 모두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따라서 A사로서는 자신이 시공하지 않은 부분이라고 안심할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공구를 분할하게 된 경위, 자신은 B사가 시공한 부분에 관하여 귀책사유가 없다는 점 등을 소명하여야 합니다. 또한 앞서 살핀 바와 같이 A사는 B사의 귀책사유로 인한 하자에 대해서도 하자보수책임을 부담하므로, A사가 하자보수책임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이행하지 않은 자라는 별도의 요건에 해당하여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도 있음을 유의해야 합니다.



박철규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변호사